

원자력 규제포획의 정치경제학



최광식

한국원자력기술협회(KANT)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학사
- KAIST 원자력공학 석사·박사(원자력정책)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 미국 Harvard Kennedy School 객원연구원
-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제도 분과위원
-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겸직 교수

1. 머리말

2021년 3월 11일은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사고 이후 전 세계적인 충격 속에 일본 원자력 산업 및 정부규제체제는 여러 조사과정을 겪으면서 기술적인 이유뿐 아니라 규제의 제도적 실패 및 규제기관의 안전문화에 대한 자성론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일본을 비롯하여 여러 기관들의 보고서에서 규제실패(regulatory failure)와 규제포획(regulatory capture)이라는 말이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규제포획이란 공익의 보호 등 규제의 목적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규제기관이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기간제산업이나 이익집단의 대리자(agent)로 전락하여 피규제집단의 선호와 일치되는 방향으로 또는 이들에 동정적(sympathetic) 입장에 서서 피규제집단에 유리한 규제정책을 펴 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일본의 경우 장시간 동안 큰 원자력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안전에 대한 자만심이 확산되었고 안전신화(safety myth)가 사업자뿐 아니라 규제기관으로도 널리 퍼졌는데 이는 규제기관의 이완을 초래하였으며 여러 다른 요인과 결합하여 규제포획을 초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또한 정부 규제기관과 사업자 간 낙하산 인사와 회전문인사 그리고 원자력 문화가 확산되어 그 심각성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 것에도 원인이 있었다고 지적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10년간의 초기에는 그러한 잘못이 초래했던 큰 사고의 충격에 대한 자각으로 일본 정부는 독립적 규제기관을 설립, 규제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규제의식을 개선하여왔다. 또한 규제기관의 조직문화에 관심을 갖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1년 IRRS를 수검하였으며 그 결과로 도출된 권

고사항에 의하여 종전부터 숙원 과제였던 규제 체계 개선이 이루어져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 규제기관이 설립됨으로써 제도적 의식적 규제독립성을 확보하였다. 한편 현 정권의 탈원전정책으로 규제기관의 문화나 분위기도 규제강화로 선회하였다. 이에 의해 사업자에 의한 규제포획의 분위기는 외형상 약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혹자는 오히려 지나치게 강한 규제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규제기관이 역포획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규제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규제전문기관인 KINS는 급여수준이나 복리후생 그리고 오래전 선포한 윤리강령 등의 시행으로 피규제기관과의 유착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전반적인 규제포획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를 제대로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후쿠시마 이후 일본의 규제체제와 문화에 대한 자성과 시행대책을 살펴보고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도출된 원인분석과 그것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규제실패를 초래하는 규제포획이 어떤 정치경제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또 그것을 측정할 수단에 대해 논하여 보고자 한다.

2. 일본의 원자력안전신화와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

원자력 안전문화 특히, 규제기관의 안전문화가 최근 중요하게 대두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과 교훈을 다루는 주요 조사분석 보고서들의 관점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고 후 약 1년간 발간된 보고서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유발했던 지진과 지진해일의 규모, 원전 설비의 손상과 이로 인한 사고 전개과정, 그리고 사고 당시의 대응과 문제점 등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는 원자력 선진국으로서 기술수준도 높고 개개인의 안전에 대한 태도도 우수하며 안전의식도 높아 일반 산업재해율도 낮았던 일본에 대한 시각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였던 동경전력은 초기에는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예상 밖의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였다.¹¹⁾

“상정할 수 없었던” 사고라는 생각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년이 될 무렵부터 바뀌기 시작하였다. 2012년 3월 카네기 재단(CEIP, 2012)은 지금까지의 사고조사 결과와 증거들에 기반하여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발전소 설계의 결함과 안전규제의 실패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러한 것들은 국제기준 및 모범관행과 비교되었다면 쉽게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

11) 2011년 4월 18일 동경전력의 시미즈 마사타카 사장은 일본 국회에서 “14~15 미터 높이의 쓰나미는 상정할 수 없었다.”고 증언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극한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고라고 주장하였다.

여 그 사고는 “예방 가능하였다”는 시각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카네기 보고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쓰나미 대비 설계에서 중대한 결함이 왜 시정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검토하여 발전소 설계의 결함이 안전규제의 실패에 기인하며, 규제의 실패는 일본 원자력 사회문화의 부적합성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부적합성의 사례로서 규제기관과 원자력산업체 사이의 유착문화와 회전문 인사 관행을 지적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 원자력 산업계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각종 은폐 및 조작 사건, 그리고 쓰나미 위험에 대한 무관심과 과소평가 등 태만이 모두 원자력 산업계 전반에 형성된 구조적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이후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 기술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에 대해서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2012년 7월 5일 일본 국회의 사고조사위원회는 후쿠시마 사고로부터 드러난 원자력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일본의 사회문화 및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을 밝히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일본 국회, 2012). 이 보고서는 사고의 근본원인이 일본 문화의 뿌리 깊은 관습들 즉, ‘무조건적 복종’, ‘상급자에 질문하지 않는 자세’, ‘기존 프로그램의 고수’, ‘집단주의’, 그리고 ‘고립주의’라고 지적하였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일본 사회 전반의 이러한 문화적 특성들이 원자력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원자력안전에 결과적으로 결함을 초

래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집단주의는 정부, 규제기관, 동경전력이 서로 유착하게 만들었고, 일본이 최고라는 자만과 고립주의로 인해 국제사회와 교류하지 않음으로써 원자력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은 점차 전문성이 부족해졌으며, 유착과 전문성 부족으로 규제기관이 결국 산업체에 포획되었고, 규제기관은 사업자의 자발적 규정 준수에만 의존한 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였다고 기술하였다.

일본의 원자력 안전신화(safety myth)는 사업기관만의 문제는 아니었으며 일본의 규제기관에도 영향을 미쳐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그중에서 몇 가지를 IAEA 보고서(2015)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는 추가적인 규제나 새로운 안전 요건을 부가하면 국민들이 기존 원전 시설이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고 의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국민이 불안해 할 것이라는 우려가 규제기관 내부에 잠재되어 있어 규제의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규제기관이 어떠한 개선 사항도 요구하지 않아야 국민들이 안심할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유지되었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원전은 사고 확률이 극히 낮다고 강조하였으며, 원전 사고 관련 비상훈련은 소극적으로 실시하였다. 일본은 대량 방사성물질을 방출하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으므로 주민을 즉시 대피시킬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처럼 일본의 원자력산업계와 규제기관은 대

부분 수동적인 자세로 단기적인 안전성 개선에만 전념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기준과 국제적인 모범사례를 고려하여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시행할 사안은 다루지 않았다. 일본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안전을 강화 혹은 개선하거나 높이는 노력을 할 경우 국민들이 보일 반응을 두려워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사업자나 규제기관 모두가 국민들에게 정직하고 투명하지 못했으며 결국 국민들과 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건설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원자력규제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란, 국민이나 지역주민이 원자력에 대한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하고 규제의 성과를 평가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규제기관이 국민이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안전성 확보 등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데 태만하거나 나아가서는 오히려 피규제자인 전력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규제를 약화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사업자의 잘못을 묵인, 부정하는 행위나 혹은 불법행위예의 참여와 협조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때로 규제 독립성 부족과 결합되어 앞서 논의한 규제포획(regulatory capture), 나아가서는 규제실패(regulatory failure)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 규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규제자는 직접적인 감시자가 없으므로 인하여 직무태만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때로는 기술적인 판단의 실수인지 고의 및 도덕적 해이에 의한 것인지 구별이 모호할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원자력안전의 특성상 큰 사고가 자주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하여, 혹은 규제의 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려운 까닭으로 인하여 규제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쉽게 드러나지 않고 그들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만연하게 된다. 예컨대 기업의 경우 주주는 전문경영자를 고용하여 경영을 맡기고 그 경영실적이나 성과를 감시함으로써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지만, 원자력 규제의 경우는 규제의 과정을 감시하는 것이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러한 규제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및 감독 소홀을 초래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큰 사고를 발생시키는데 기여함으로써 국가적인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3. 규제실패와 규제포획 이론

INES 등급 7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국내외 언론들이 보도한 기사들 중 규제독립성에 관한 비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뉴욕타임즈 등의 미국 언론은 일본사회 특유의 공모문화, 즉 의회와 정부관료, 규제기관 그리고 사업자와 일부 학자들간의 유착문화를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미국 규제기관 간부들의 전력사업자와의 유착 관행 등을 다룬 바 있

는데 이는 규제독립성의 문제와 연관된다. 후쿠시마 사고는 결과적으로 일본정부가 그 대형사고의 발생을 막지(prevention) 못하고 또한 방사성물질의 지구적 확산을 저감(mitigation)하는데 실패하였다는 측면에서 일본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이며 규제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뉴욕타임즈는 2011년 4월 26일 “Culture of Complicity Tied to Stricken Nuclear Plant”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당시 일본의 원자력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보안원(NISA)이 일본의 공모문화(共謀文化, Culture of Complicity) 안에서 후쿠시마 사고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도하였다. 2000년 후쿠시마 제1원전의 증기건조기 균열과 관련한 은폐사실을 NISA에 알려준 내부 고발자(whistle-blower)를 노출(expose)시키고 그 사건에 대한 조사를 동경전력이 자체적으로 수행케 하였으며, 핵심 설비에 대한 적절한 점검을 하지 않은 채 수명연한 연장을 결정하였고 아마쿠다리, 아마가리 등의 낙하산, 회전문 인사 관행으로 공무원들이 원자력 감독기관과 진흥부서간에 자주 자리를 옮기면서 이 둘 사이의 경계는 점점 더 모호해졌음을 지적하고, 또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간접 선출되는 방식으로 인해 자민당과 공화당 양당이 원자력사업자에 포획되어 있음도 지적하였다. 뉴욕타임즈는 또 2011년 5월 7일자 “원자력규제기관, 원자력산업과 지나친 유착으로 비난받아”라는 기사에서 미국 NRC가 업계와의 지나친 밀착

으로 인한 공정한 규제와 감시에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원자력 진흥을 담당했던 인사가 NRC 위원에 임명되고, NRC 퇴직자들이 원전업체나 로비회사로 자리를 옮긴 많은 사례를 예시하였는데 특히 미국에너지부의 Director of nuclear energy로 근무한 William D. Magwood 가 2010년 4월 USNRC 위원으로 임명된 것을 지적하였다.

이 보도에서는 또 2007년 Byron 원전에서 NRC 현장 주재원의 느슨한 규제감독을 언급하면서 사업자 상황을 고려하여 조치 요구 결정에 주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전에 Vermont Yankee 원전을 포함한 62개 원전에 대한 인허가갱신(License Renewal) 승인 시에 “거부한 사례가 없으며 NRC는 ROP 체제 도입에 따른 규제약화 가능성이 있고 예산 확보에 있어 원자력 산업계와 밀착된 정치인들의 영향력 개입 가능성 등 우려가 있다”고 보도하였다.

외형적으로 규제독립성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일본과는 달리 최고의 제도적 독립성을 갖춘 미국의 규제기관에 대한 뉴욕타임즈 등 언론사들의 비판적인 시각과 보도는 외형적 독립성의 확보만으로는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한 언론의 시각의 일단을 보여준 것이다.

규제실패란 규제기관이 공익목적에서 벗어나서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는 규제기관 종사자가 부패하여 규제권한을 개인

의 금전적 목적을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규제기관이 무능한(incompetent) 경우 그리고 규제기관이 사업자에게 포획(capture)된 경우이다. 보통 정부가 규제업무를 수행하므로 규제실패는 정부실패(government)의 한 유형이다. 국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 규제독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궁극적으로 규제기관이 원자력안전이라는 공익 추구라는 설립 목적에 충실하지 않고 법적, 제도적으로 원자력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 고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대사고의 발생 및 국민에게 불안을 제공하는 규제실패(regulatory failure)를 초래하는데 대한 우려에 근거를 두고 있다.

4. 규제포획의 원인

앞에서 언급했듯이 규제포획이란 규제의 목적의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규제기관이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기간제산업이나 집단의 대리자(agent)로 전락하여 피규제집단의 선호와 일치되는 방향으로 또는 이들에 동정적(sympathetic) 입장에 서서 피규제집단에 유리한 규제정책을 펴 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학자들은 이러한 규제포획이 일어나는 원인으로서는 다음을 들고 있다.

먼저 **침해된 정보**이다. 이는 피규제 기관의 전문성이 규제기관을 압도하며 규제기관은 피규제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원의 비대칭성**인데 규제기관이 산업

체에 비해 자금력과 인력면에서 열세에 처하고 피규제기관은 그들의 자금과 인력으로 로비를 하며 규제기관의 퇴직 관료에게 일자리 등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서 양자 간의 공생관계를 형성한다.

다음으로 **갈등회피 유인**이 있다. 규제기관 입장에서 피규제기관은 동지가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갈등을 피하고 공생관계를 형성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외부신호 의존경향**이다. 일반적으로 공익의 달성 등 모호한 규제목적 설정하고 있는 특성상 규제기관은 자기들이 제대로 규제를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규제기관은 외부에서 규제기관의 정책 및 역할에 대해 보이는 반응(외부신호)을 관찰하여 정책을 결정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즉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업자의 반응이나 형성되는 여론 그리고 언론이나 지역주민 대중 및 학자와 전문가들이 보내는 평가 등의 신호(signal)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규제 행정의 목표가 다양하게 정의되지 못하고 규제기관의 업적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에 규제기관이 **보다 상위의 정책목표에 과잉동조(over-conforming)**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 한 예로서 원자력의 경우 국가 수반의 국가운영정책목표나 국가에너지개발계획 등의 가시적인 상위 정책에 과잉동조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5. 원자력 분야의 규제포획 검토

한 국가의 원자력산업 초기에는 사업자에 비하여 규제기관의 인력과 재원은 열세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원자력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에 많이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원자력사업자는 이윤을 추구하는 속성상 그들이 충분한 정보를 규제기관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정보의 침해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원자력산업이 성장하고 규제수요가 증가하면서 규제기관의 인력과 예산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요즈음의 경우 조기에 안전인프라 구축요구 등 국제적인 압력이 커지면서 조기에 인력과 재원의 열세에서는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UAE의 FANR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인력과 재원의 열세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규제대상인 원전의 기수가 늘어나고 규제 실무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과다하게 의존할 가능성(즉 침해된 정보)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원자력안전규제의 목적인 '수용가능한 수준의 안전성 확보' 혹은 '원자력이용으로부터 초래되는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추상적이어서 규제기관의 목적달성 정도(이를 규제효과성이라 부를 수 있다)

를 제대로 측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국민보호 보다는 원자력사업자의 '경제성 있는 전력의 생산'이라는 또 다른 공익에 압도당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전력생산에 의한 국익 혹은 공익이나, 추상적인 수용가능한 수준의 안전성 확보냐 하는 논의에서 규제기관은 전력사업자와의 갈등회피 성향을 보일 수 있다. 규제비용 일부를 전력사업자로부터 받는다면 일반적인 규제기관의 여건에서는 이러한 갈등회피 유인을 무시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특히 앞에서 논한 규제 목표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외부신호 즉 원자력사업자나 규제기관 외부의 학자들이 여러 포럼, 세미나,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혹은 언론에서 다루어지는 논평 혹은 기사들로 여러 외부 신호를 전달하게 되고 규제기관은 이에 과잉 반응하게 될 수 있다.

원자력사업자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 과잉규제를 하고 있다거나 너무 보수적인 결정이라거나, 부당한 규제부담(undue regulatory burden)이라는 의사를 개진하는 외부 신호들이 많이 탐지될 수 있고 이 경우 규제기관은 그에 동조하게 되는데 이는 사업자에 의한 포획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요즈음은 그 반대로 반원전을 주장하고 에너지전환을 주장하는 외부신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6. 규제포획 자체평가표

우리나라는 2011년 10월 26일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독립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립됨으로써 그동안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오던 법적 제도적 (de jure) 독립성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차관급 위원장으로 그 위상이 변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독립성의 확보에는 규제기관 종사자들의 심정적, 정서적 독립성의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는 측면에서 규제분야 종사자들이 심정적으로 원자력사업자에게 어느 정도 포획되어 있는지를 측정하고 이를 규제기관의 운영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부규제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제포획 이론에 근거하여 새로 출범한 규제체제 하에서 종사자들이 규제포획 정도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자체평가표를 개발하였다. 본 자체평가표는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규제기관 종사자들이 스스로의 사업자에 의한 포획의 정도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직무의식을 향상하여 지구적 원자력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한번 사용해볼 것을 권고한다.

(참고문헌)

1. 규제연구 2020년 12월, 제29권 제2호, 규제기관의 안전문화-원자력안전규제 제도의 보완적 역할로서의 기대와 한계, 최영성, 정수진, 최광식
2. 원자력산업 2005/1, 원자력 안전의 정치경제와 사회심리, 최광식
3. Transactions of KNS Spring Meeting, May 26-27, 2011, Development of Checklist for Self-Assessment of Regulatory Capture in Nuclear Safety Regulation, K.S.Choi, Y.E.Lee, et al.
4. 원자력산업 2020.6 원자력 안전규제 합리화에 대한 고찰, 최광식
5. 정부규제론, 2019 1월 15일 초판 24쇄, 법문사, 최병선

7. 맺음말

규제과정이란 고도의 정치적 경제적 과정이다. 규제기관은 공익을 추구하나 피규제자는 이윤 즉 경제적 편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부딪힐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사업자는 규제포획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원자력시설에 대한 규제를 하는데 있어서 규제실패가 어떻게 초래되는지와 일본 후쿠시마 사고 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규제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하나의 요소로서 규제포획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규제포획의 원인들, 즉 침해된 정보, 자원의 비대칭성, 갈등회피 유인, 외부신포 의존성향** 등을 도출하고 이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규제포획의 정도를 체크해볼 수 있는 자체평가표를 만들어 제시하였다. (표의 11개 항목 체크 표시 후 위의 해당 점수 합계가 11-20:불량, 21-40:보통, 41-55:양호) 이 자체평가표는 우리나라의 규제당국인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실무규제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들이 스스로를 진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KMIF**

(본고는 한국원자력기술협회(KANT)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규제포획 자체평가표

질문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1	2	3	4	5
A. 침해된 정보	A 1 사업자의 전문성이 규제자(나)를 압도하는가					
	A 2 규제자(나)는 사업자 정보에 의존하는가					
	A 3 규제자(나)는 규제 결정 또는 기술적 판단을 하는데 있어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반영하는가					
B. 자원의 비대칭성	B 1 규제기관은 사업자 규제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가					
	B 2 규제자(나)는 퇴직 후 사업자가 제공한 직무에서 일을 할 수 있는가					
	B 3 규제자(나)는 사업자를 규제비용 제공자로서 고려하는가					
C. 갈등회피 유인	C 1 규제자(나)는 사업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려고 하는가					
	C 2 규제자(나)는 사업자로부터 반격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추진을 회피하려고 하는가					
	C 3 규제자(나)는 사업자를 원자력계의 동지라고 생각하는가					
D. 외부신호 의존 경향	D 1 규제자(나)는 외부 반응에 따라 규제 목적 달성 여부를 결정하는가					
	D 2 규제자(나)는 공익목적으로서 원자력 안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외부 반응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립하는가					